

장애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 council 정부가 일단 과세를 하게 되면 납세자는 감면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council 정부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. council 정부는 2월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회신해야 한다. 이 결정에 불복하거나, 2월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하면 평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이행해야 한다.

## **VIII. 납부**

### **1. council tax의 고지**

council tax는 통상 3월 또는 4월에 고지된다. 고지서에는 납부세액과 산출근거를 담고 있다. 또 고지서에는 분할 납부 세액과 매회 분할 납부할 세액 및 납부 일자도 기재되어 있다. 보통 분할 납부회수는 10회이다. 그러나 4월 말 이후에 고지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줄어든다.

### **2. 고지 오류의 정정**

고지된 세액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납세자는 즉시 council 정부에 이를

알려야 한다. 정정된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납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.

### **3. 세액 변경**

경감 대상이 되거나 다른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council 정부는 새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다. 이 고지서에는 연중 납부해야 할 세액과 분할 납부해야 할 세액이 기재된다.

### **4.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**

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면 납세자는 즉시 council 정부에 이를 신고하고 세금 경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.

### **5. 체납자에 대한 조치**

납세자가 분할 납부세액을 체납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납부를 최고하는 독촉장을 받게 된다. 납세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납세를 하지 않거나, 두 번째의 독촉을 받고도 납세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박탈당하고 연간 세액중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